

차대차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260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0530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의 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60	<p>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2조의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를 위반한 점을 고려 기본과실을 100:0으로 본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교차로 내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피청구차량이 급차로변경을 시도하며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할 때 청구 차량과의 거리가 가까워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을 피양 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서행하여 진로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한 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진행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직진차로에서 노면의 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직진/좌회전의 노면표시 위반하여 우회전하였고, 진로변경 신호 없이 급우회전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차량의 불가항력이 인정되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로 결정함
- 도표 260은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2조의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를 위반하였으므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직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직진이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 중 직진/좌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60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260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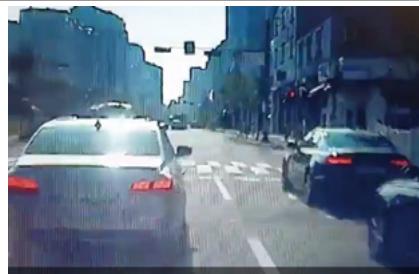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644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90 : 1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 청구차량이 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가 변경되어 출발하던 중 후행 피청구 차량이 직진차로인 1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추월형태로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60	<p>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2조의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를 위반한 점을 고려 기본과실을 100:0으로 본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직진을 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직진차로인 1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우회전이 금지된 1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정차 후 출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신호 변경 후 출발하다가 피청구차량과 접촉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1차로는 직진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우회전차로임)

주요 쟁점

-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선행차량과 직진차로에서 노면의 표시를 위반하여 추월형태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신호변경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야 출발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선행 청구차량이 신호 변경 후 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중 직진차로인 1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던 후행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청구차량은 신호 변경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야 출발하였음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신호가 변경되어 2차로에서 출발하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제출된 동영상에 나타나는 사고경위를 볼 때, 피청구차량은 직진차로인 1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획단보도 부근에서 차로변경 형태의 우회전을 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하였던 점, 청구차량이 신호변경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야 출발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0은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2조의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를 위반하였으므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직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직진 중 직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추월형태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60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신호변경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출발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차대차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기본과실)				선행 우회전 (직진·우회전노면 표지차로)	후행 직진(우회전 노면표지차로)	참고기준 261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682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0 : 10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61	<p>B차량이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B차량의 주행차로가 교차로 이후 차로가 감소하여 교차로 내 차로변경 없이 직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직진한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기본과실을 0 : 1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은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직진/우회전 가능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은 교차로 내 지시위반을 하여 발생된 사고임은 인정하나, 피청구차량도 안전운전을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우회전 가능차로인 2차로에서 선진입하여 우회전 중 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우회전을 완료한 시점에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을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2차로 : 좌회전, 직진, 우회전차로, 3차로 : 우회전차로)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 운전석 앞부분, 피청구차량 : 조수석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모습) 동영상(우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주요 쟁점

-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선행차량이 우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중인 후행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직진/우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우회전 중 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우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선행한 점,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1은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은 중대한 안전운전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주행차로가 교차로 이후 차로가 감소하여 교차로 내 차로변경 없이 직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우회전 가능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던 선행 피청구차량을 우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61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0% ● 피청구차량 0%

차대차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수정과실)					참고기준 261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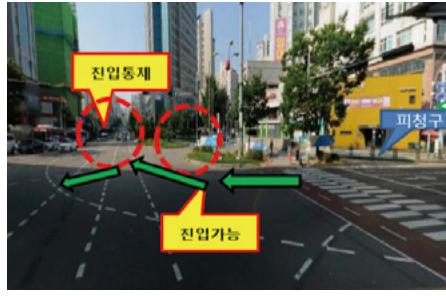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6848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직진/우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우회전 중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61	<p>B차량이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B차량의 주행차로가 교차로 이후 차로가 감소하여 교차로 내 차로변경 없이 직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직진한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기본과실을 0 : 1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우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정상 우회전 중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우회전 가능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던 청구차량으로서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선행하여 우회전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이 우측 도로를 통제하여 다시 직진하던 중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우측 도로가 통제 중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회전하여 접촉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3차로에서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주요 쟁점

-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선행차량이 우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중인 후행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선행 직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좌회전/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 중 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 사고 발생 이전에 청구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 중 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하였던 점, 양 차량의 손상부위와 동영상에 나타난 사고 상황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1은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은 중대한 안전운전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주행차로가 교차로 이후 차로가 감소하여 교차로 내 차로변경 없이 직진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우회전 가능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우회전 가능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우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61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사고 발생 전 피청구차량이 선행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차대차 회전교차로 사고 – 회전차로 1차로형

회전교차로 진입 대 회전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262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278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80 : 2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62	<p>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차로를 주행 중인 B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A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회전중인 B차량도 진입차량의 주행에 주의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감속 또는 제동을 해야 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이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80 : 2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로 진입 중 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회전교차로로 진입 전 감속하여 서행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빠른 속도로 주행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전교차로에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하여 회전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후진입하던 청구차량이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지 않고 진입하여 피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여, 피청구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회전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회전교차로의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진입하는 모습)

주요 쟁점

-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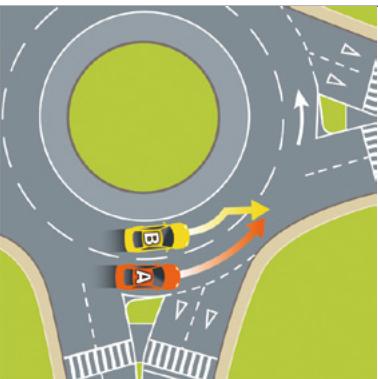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며 회전하고 있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청구차량에게 양보의무가 있는 점, 피청구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동영상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청구차량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2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차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회전중인 차량도 진입차량의 주행에 주의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감속 또는 제동을 해야 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회전교차로를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6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차 회전교차로 사고 – 회전차로 2차로형

회전2차로 회전 대 회전1차로에서 진출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263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068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63	 <p>회전교차로에서는 진출을 위하여 언제든지 진로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예상가능하고, 또한 같이 회전하고 있는 차량끼리 양보 의무가 가중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진로변경 사고보다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비율을 약간 낮춰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우측 도로로 진출하면서, 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정상적으로 진입하여 직진하였는데, 피청구 차량은 방향지시등 없이 계속 회전하여 청구차량의 오른 쪽 측면을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 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전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회전 중 급차로변경하는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은 회전교차로에 동시 진입하여, 피청구차량은 2차로에서, 청구차량은 1차로에서 회전 중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로 무리하게 진로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 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는 모습)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1차로로, 피청구차량이 2차로로 동시에 진입하는 모습) 동영상(피청구차량이 2차로를 회전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 중인 차량과 2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과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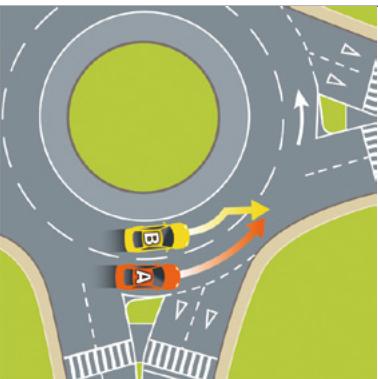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확인됨

결정 이유

-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1차로를 회전하다가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던 중 2차로에서 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 양 차량의 손상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3은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진출을 위하여 언제든지 진로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같이 회전하고 있는 차량들은 서로 양보 의무가 가중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진로변경 사고보다 진로변경차량의 과실비율을 약간 낮춰서 회전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회전하던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63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차 회전교차로 사고 – 회전차로 2차로형

회전2차로 회전 대 회전1차로에서 진출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263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970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63	 <p>회전교차로에서는 진출을 위하여 언제든지 진로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예상가능하고, 또한 같이 회전하고 있는 차량끼리 양보 의무가 가중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진로변경 사고보다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비율을 약간 낮춰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이 회전로타리 내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 청구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이 충격되었고,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진로변경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교차로 내에서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회전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의 회전교차로 내 급차로변경 사고인 바,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를 회전 중인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2차로를 회전 중인 모습)
- 동영상(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진로변경하는 청구 차량의 모습)

주요 쟁점

-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 중인 차량과 2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과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급진로변경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청구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하였음

결정 이유

-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를 따라 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을 급격히 하였던 점,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263은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진출을 위하여 언제든지 진로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같이 회전하고 있는 차량들은 서로 양보 의무가 가중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진로변경 사고보다 진로변경차량의 과실비율을 약간 낮춰서 회전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63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진로변경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회전교차로 사고 – 회전차로 2차로형

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회전교차로	1차로→회전2 차로 진입	2차로→회전2 차로 진입	참고기준 264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0559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 중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64	 <p>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으로서 교통안전을 위해 1차로에서 진입한 A차량은 회전 1차로로 진입해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시 서로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 모두 양보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좌측에 있는 A차량은 우측에 있는 B차량에 좀더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 60:4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우측 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선진입 중 원쪽 차로에서 후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원쪽 뒷부분을 충돌한 사고로,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한 청구차량을 후진입한 피청구차량이 이 충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1차로에서, 청구차량은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2차로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충돌한 사고로, 본 사고는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의 진로변경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회전교차로의 모습)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1차로의 차량이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면서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 중 1차로에서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약간 선행인 점, 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던 점, 접촉부위에 비추어 피청구차량의 접촉으로 청구차량이 약간 회전형태로 정차된 것으로 추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4는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으로서, 교차로에 진입시 서로 양보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왼쪽에 있는 차량은 오른쪽에 있는 차량에 좀 더 주의하여 회전교차로로 진입하여야 하므로, 오른쪽 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왼쪽 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도표 264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회전교차로 사고 – 회전차로 2차로형

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264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174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 중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64	<p>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으로서 교통안전을 위해 1차로에서 진입한 A차량은 회전 1차로로 진입해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시 서로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 모두 양보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좌측에 있는 A차량은 우측에 있는 B차량에 좀더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은 동시에 회전교차로로 진입하였고, 이후 피청구차량이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면서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교차로 내에서 진로를 변경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선행하여 회전교차로로 진입 중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회전교차로 후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선행하여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 진입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청구차량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사고현장 사진(회전교차로 진입로의 모습)
- 피청구차량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 손상)

주요 쟁점

- 1차로의 차량이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면서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회전교차로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 중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확인됨
- 사고 후 정차 위치와 양 차량의 손상부위를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유

-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2차로(왼쪽 차로)에서 진입하였으나 사고 후 정차 위치를 보면, 선행상태에서 회전교차로를 진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4는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는 상황으로서, 교차로에 진입시 서로 양보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왼쪽에 있는 차량은 오른쪽에 있는 차량에 좀 더 주의하여 회전교차로로 진입하여야 하므로, 오른쪽 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왼쪽 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양 차량이 동시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64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왼쪽 차로에서 진입하였던 피청구차량이 선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차 회전교차로 사고 – 회전차로 2차로형

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수정과실 준용)				1차로→회전2 차로 진입	2차로→회전2 차로 진입	참고기준
						264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465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 중 피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64	<p>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으로서 교통안전을 위해 1차로에서 진입한 A차량은 회전 1차로로 진입해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시 서로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 모두 양보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좌측에 있는 A차량은 우측에 있는 B차량에 좀더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중인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동영상을 보면,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주행하던 중 뒤늦게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회전차량우선'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선진입하여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회전교차로의 모습)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운전석 뒷부분, 피청구차량 조수석 앞부분)

주요 쟁점

- 1차로의 차량이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면서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서행하던 피청구차량의 회전교차로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 중 왼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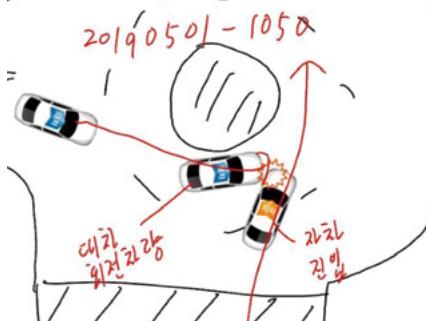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 중 왼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서행으로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점, 청구차량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4는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는 상황으로서, 교차로에 진입시 서로 양보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왼쪽에 있는 차량은 오른쪽에 있는 차량에 좀 더 주의하여 회전교차로로 진입하여야 하므로, 오른쪽 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왼쪽 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다른 방향의 도로에서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나,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도표 264를 준용하여 과실을 검토하였고,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였던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차 회전교차로 사고 – 회전차로 2차로형

회전교차로 대진입 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회전교차로	 회전1차로 회전	 회전1차로로 대진입	참고기준 265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739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를 회전 중 회전교차로의 1차로까지 대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65	 <p>회전교차로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전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진입차량의 경우 서행 및 양보 의무가 있으며, 급진로변경과 유사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진입하는 B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 : 90</p>

주장 내용	
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를 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곧바로 1차로로 가로질러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1차로를 진입 중 1차로에서 회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1차로로 서서히 진입하여 청구차량이 충분히 인식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1차로를 회전 중 1차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회전 중인 청구차량의 모습) 동영상(양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의 1차로로 대진입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까지 곧바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에서 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곧바로 1차로까지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왼쪽의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는 청구차량이 명백히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곧바로 1차로까지 직진한 점, 청구차량의 운전자도 위와 같은 피청구차량의 운행 행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5는 회전교차로에서 기본적으로 회전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진입차량의 경우 서행 및 양보 의무가 있으며, 사고의 형태가 급진로변경과 유사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 실비율을 90%, 회전 중인 차량의 기본과 실비율을 1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를 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1차로까지 대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65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차대차 회전교차로 사고 – 회전차로 2차로형

회전1차로에서 진출 대 진입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신호등 있음	회전교차로	진로변경 (회전1→2차로)	회전2차로로 진입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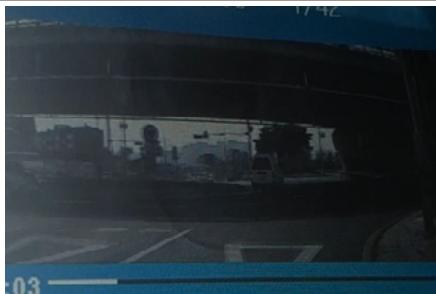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331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던 중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66	<p>회전교차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전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진입차량의 경우 진입 시 양보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회전차량도 2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진로변경 해야 하므로, 양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여 주행 중 차로 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직진형태로 차로를 변경하여, 선진입한 청구차량으로서는 피양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진출 중 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현수번호	제2019-00000
성명	■ 가족상호 ■ 직업상호	주민번호	
주소			
우편번호	우편번호	면별	
사고지점	차종: 승용차	번호: 061-XXXXXX	(소유자:)
	발행일자	2019.02.27 (수) 11:57	
	발행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사고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차대사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별명	인증 또는 지시 위반		
피해내용	인증 차량 0	부상 2 명	불교: 700,000 원 상당
사고내용	사건 고지자는 억제화물운송이 설치된 회전교차로 이용 구 면밀 진입전에 양방향차량과 노면에 양보표시가 있는 교차로를 #1차 방향으로 일시정지 없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 면서, 회전교차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2차방 향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 동영상(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청구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기재됨

주요 쟁점

-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회전하던 차량이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 중 오른쪽 도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 중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회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2차로에 진입하면서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진입로에 양보표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6은 회전교차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전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진입차량의 경우 양보의 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회전차량도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여 진로를 변경해야 하므로, 2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다가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회전을 하다가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66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회전교차로 사고 – 회전차로 2차로형

회전1차로에서 진출 대 진입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신호등 있음	회전교차로	진로변경 (회전1→2차로)	회전2차로로 진입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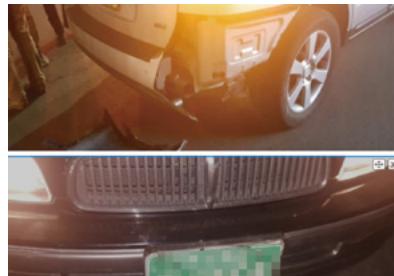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4776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1차로의 실선구간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66	<p>회전교차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전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진입차량의 경우 진입 시 양보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회전차량도 2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진로변경 해야 하므로, 양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전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진입하면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는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급진입하여 피청구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청구차량의 뒷범퍼를 충돌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차로변경 중 회전교차로에 정상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2차로 형태의 회전교차로)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조수석 뒷부분, 피청구 차량의 앞부분 손상)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주요 쟁점

-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회전하던 차량이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 중 오른쪽 도로에서 2 차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피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음

결정 이유

-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진로변경하여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던 중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 격한 사고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하고,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하여 우측 도로로 진출하려고 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6은 회전교차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전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진입차량의 경우 양보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회전차량도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 여 진로를 변경해야 하므로, 2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서 진로변경 중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던 피청 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66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 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이륜차 신호위반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302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217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왼쪽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2	<p>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차량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는 바, 정상적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입장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성이 극히 적으므로, 신호위반 A이륜차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p>•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녹색신호에 정상 직진 중 왼쪽 소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p> <p>• 신호위반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피청구인</p> <p>• 피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 중 오른쪽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 확인 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20-00000000호
성명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6	
주소	(전화번호 : 010-XXXX-XXXX)		
운전면허	종별 : 차1종 보통	번호 : 2	
사고처지	차종 : 승용차	번호 : 00000000000000000000	(소유자 :)
발생일시 : 2019.02.09 20:00			
발생장소 : 경기도 부천시			
사고유형 : ■ 치외차 □ 치상단독 □ 치대사망 □ 기타			
사고원인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피해내용 : 인상 : 사상 0, 부상 2 명, 물상 : 0 원			
고객요 구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기재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피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모습
 - 심의의 차량 동영상(사고 후 정지해 있는 양 차량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있는 교차로)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신호 위반하여 직진 중인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소로에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한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2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차량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는 바, 정상적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입장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극히 적으므로 신호위반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를 진행하다가 녹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0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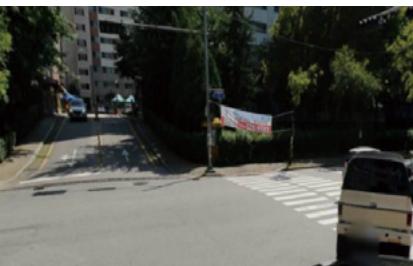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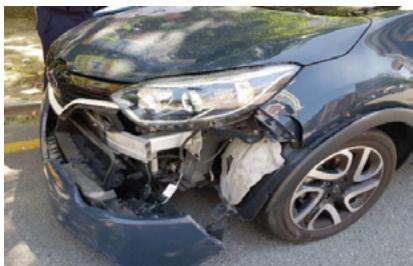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 (황색 대 적색) (수정과실 준용)					참고기준 303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653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 진입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3	<p>양측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적색신호에 진입한 B 차량의 과실이 중하므로 도표 203을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 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륜차가 차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보호되어야 하므로 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왼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적색점멸신호에, 피청구차량은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 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청구차량이 단지 내에서 도로로 좌회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진입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적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 사고현장 사진(사고 장소는 점멸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전면부 손상)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이륜차와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적색점멸신호에 교차로를 진입 중 왼쪽 도로에서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일시정지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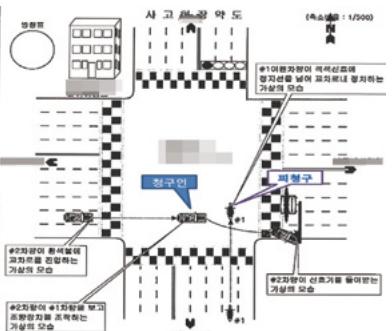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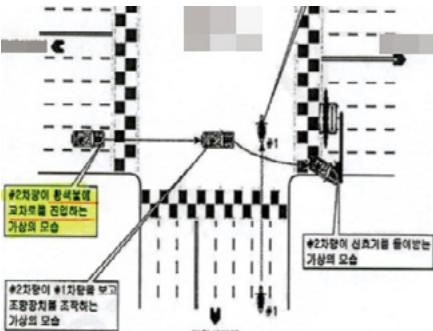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점멸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 후 교차로에 진입 중 왼쪽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적색점멸신호에 대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을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이 큰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 피청구차량이 황색점멸신호에서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였는지는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3은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적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중하므로, 도표 203을 준용 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륜차가 상대적으로 더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10% 낮추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점멸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점멸신호에, 피청구차량이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점멸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나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도표 303을 준용하여 과실비율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 (적색 대 황색) (기본과실)	 신호등 있음	 사거리	 적색 직진	 황색 직진	참고기준 304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4368	결정비율
사고내용	<p>•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을 피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가로등을 접촉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304		<p>A이륜차가 적색신호에 진입하고 B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였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03에 비해 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 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양하다가 오른쪽의 가로등을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 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성명	□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운전면허	종별 : 제1종 대형 번호 :	
사고처방	차종 : 승용차 번호 : ■■■■■	(소유자 : ■■■■■)
발행일시	2018.08.16 08:50	
발생장소	■■■■■	
사고유형	■ 차대차 □ 차량단독 □ 차대사망 □ 기타	
사고현상	신호 또는 자시 위반	
피해내용	원인 : 사행 0, 부상 1 명 정도 : 10,000 원 상당	#1이동도로에서 ■■■■■으로 직각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이를 피하기위해 #2차량의 조향능력을 끌어들이며 가로등을 끌어당은 사고임.
사고계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임)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충격하여 손상된 가로등의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이륜차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진입하던 파청구차량(이륜차)을 발견하고 피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가로등을 접촉한 사고임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양 차량 모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점, 청구차량이 피양하다가 가로등을 접촉한 비접촉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4는 이륜차가 적색신호에 진입하고, 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였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도표 203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와의 충격을 피하다가 청구차량이 가로등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04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 (적색 대 황색) (수정과실)					참고기준 304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537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5 : 35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4		<p>A이륜차가 적색신호에 진입하고 B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였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03에 비해 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 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p>피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을 하였고,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황색신호에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오른쪽 앞측면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이륜차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이륜차)의 교차로 진입 속도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던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륜차)은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하던 중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우측 도로에서 진행한 점,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고,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빠른 속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발생한 사고인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4는 이륜차가 적색신호에 진입하고, 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였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도표 203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중 적색신호에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이며, 도표 304를 적용하여 과실을 검토하였고, 야간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교차로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입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5% ● 피청구차량 65%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 (적색 대 적색) (기본과실)				참고기준 305
	신호등 있음	사거리	적색 직진	적색 직진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822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이륜차)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5		양측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304에 비해 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 기본비율 A : B = 40 : 6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여 3차로를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예측 출발하여 발생한 신호위반 사고임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함</p>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부분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이륜차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녹음내용상 경찰서에서는 피청구차량이 예측출발을 하였고, 청구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보고 있는 점, 피청구차량의 진입정도, 사고 당시는 야간인 점 및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차량의 과실이 좀 더 크다고 보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5는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04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 뿐만 아니라 피청구차량(이륜차)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05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 (적색 대 적색) (수정과실)				참고기준
	신호등 있음	사거리	적색 직진	적색 직진

305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2860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과속하여 교차로 진입하던 중 피청구 차량(이륜차)도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5	<p>양측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04에 비해 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p>피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도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가는 시점에서 피청구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양 차량 과실은 동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청구차량이 제한속도를 60.7km/h 초과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과속 등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80% 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청구차량의 속도위반이 기재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양 차량의 신호 위반이 확인됨

주요 장점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이륜차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과속 여부

결정 그거

-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교사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제한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충격하였음

결정 이유

- 동영상 등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통과할 무렵 피청구차량(이륜차) 또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인 점, 청구차량이 제한 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5는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04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 뿐만 아니라 피청구차량(이륜차)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05를 기초로 과실비율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가)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대 왼쪽 도로에서 직진 사고(동일 폭)(동시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직진	직진	참고기준 306 (가)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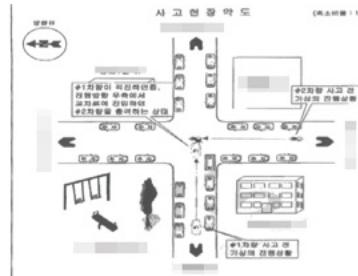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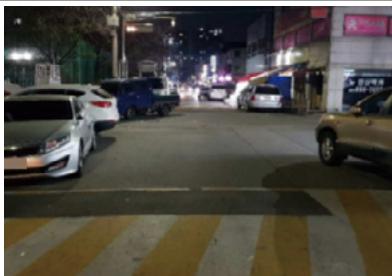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188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6(가)	<p>(가)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진입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A이륜차에게 우선권이 있고, 이륜차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폭의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이륜차)은 교차로에 후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55%, 피청구차량의 과실 45%가 타당함 	<p>약도 미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의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경찰서 조사 결과, 피청구차량이 피해차량이고,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하였던 점, 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임)
 -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청 구차량(이륜차)이 피해차량으로 판단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양 차량이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이륜차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피첨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형태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통상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양 차량 모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306의 (가)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동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이륜차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고, 이륜차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왼쪽 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였으므로, 도표 306의 (가)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다)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대 왼쪽 도로에서 직진 사고(동일 폭) (B선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직진	직진	참고기준 306 (다)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6232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5 : 55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6(다)	<p>기본비율 A : B = 45 : 55</p>		
	<p>(다)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진입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A이륜차에게 우선권이 있고, 이륜차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선진입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위의 이륜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A이륜차가 선진입하였다면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고, B차량이 선진입한 경우에는 양측의 기본과실을 45:55로 정하였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선진입하여 직진 중 오른쪽에서 서행하지 않고, 후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상황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에서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과 전방주시태만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이 손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 •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왼쪽 도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이륜차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상호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서행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청구차량의 속도는 확인되지 않는 점, 접촉 부위에 비추어 청구차량이 선진입 상태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로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인 점, 양 차량의 충격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6의 (다)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선진입한 상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후진입한 이륜차와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선진입 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는 점, 오른쪽 도로에서 이륜차가 후진입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왼쪽 도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5%, 오른쪽 도로에서 후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45%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 하였던 상황이므로, 도표 306의 (다)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5% ● 피청구차량 45%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가) 왼쪽 도로에서 직진 대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사고 (동일 폭)(동시진입)(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직진		직진	참고기준 307 (가)
---	--------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824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7(가)	<p>(가) B차량이 우측차량인 경우에도 위의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시진입시 양측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하였고, 선진입 여부에 따라 양측의 기본과실을 35:65와 60:40으로 각각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사거리 교차로의 오른쪽 도로에서 서행으로 선진입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왼쪽 도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에 후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급하게 후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80% 가 타당함</p>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모습)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앞부분, 피청구 차량(이륜차)의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이륜차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명백한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7의 (가)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왼쪽 도로에서 진입한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 왼쪽 도로에서 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왼쪽 도로에서 진행하였던 상황이므로, 도표 307의 (가)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나) 원쪽 도로에서 직진 대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사고(동일 폭) (A선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직진	직진	참고기준 307 (나)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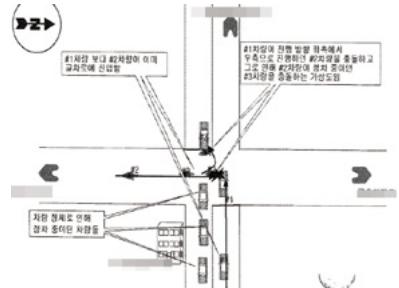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02570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5 : 65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후진입을 하면서, 왼쪽 도로에서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7(나)	<p>(나) B차량이 우측차량인 경우에도 위의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시진입시 양측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하였고, 선진입 여부에 따라 양측의 기본과실을 35:65와 60:40으로 각각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5 : 65</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p>약도 미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이면도로의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직진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피청구차량이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급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오른쪽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은 왼쪽에서 직진하다 접촉한 사고로, 주차 중인 차량들로 인해 양 차량 모두 시야가 불량한 상황이었고,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진입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65%, 피청구차량의 과실 35%가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2016-2
성명	[Redacted]		
주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밀번호		
운전면허	면허증명 : 1111111111111111 (면허번호 :)		
사고처방	처방 : 이용호 쇼핑	판호 : [Redacted]	[소유자 :]
발행일자	2016.10.19 09:53		
발행장소	[Redacted]		
시고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화재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락 <input type="checkbox"/> 차대사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교차로에서 왕복운전하다		
피해내용	인피 : 시내 100m, 부상 : 1명, 물ущ : 20,000 원 상당		
사고개요	<p>[Redacted]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로로 진입하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함께 일부 부서져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교차로를 지나던 다른 운전자에게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차량이 일부 부서져 충돌한 교차로에 경계선을 칠해놓았습니다.</p>		



- 동영상(왼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교차로 내에서 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피해차량으로 판단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진입한 것으로 기재됨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 사거리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였고,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왼쪽 도로에서 선진입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였던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륜차)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7의 (나)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선진입한 경우 선진입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는 점과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른쪽 도로에서 후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5%, 왼쪽 도로에서 선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5%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한 상황이므로, 도표 307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5% ● 피청구차량 35%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다) 원쪽 도로에서 직진 대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사고(동일 폭) (B선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직진	직진	참고기준 307 (다)
---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204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진행 중 원쪽 도로에서 후진입하여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7(다)			(다) B차량이 우측차량인 경우에도 위의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시진입시 양측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하였고, 선진입 여부에 따라 양측의 기본과실을 35:65와 60:40으로 각각 정하였다.	기본비율 A : B = 60 : 4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사거리 교차로의 오른쪽에서 직진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원쪽에서 직진하여 발생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의 교차로 진입을 인지할 수 없었고,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뒷측면을 접촉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는 순간 피청구 차량(이륜차)과 충격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뒷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던 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후진입 하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이었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선진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 청구차량도 교차로 진입시 서행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7의 (다)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선진입한 경우 선진입 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한 경우보다 선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오른쪽 도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왼쪽 도로에서 후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이므로, 도표 307의 (다)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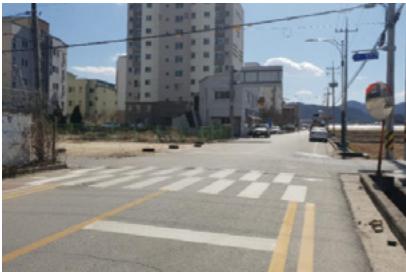
(가)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사고(동시진입) (기본과실)					참고기준 308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992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 중 대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8(가)		<p>(가) 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는 A이륜차에게 우선권이 있고,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시진입의 경우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p>피청구인</p>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진입시 서행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륜차)은 대로에서 과속으로 진입하다가 청구차량을 충돌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대로에서 정상 직진 중 왼쪽 소로에서 맞은 편 농로로 진입하려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교통사고사실확인원</th> <th style="text-align: right;">교통사고 경수번호 제30</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성</td><td style="width: 15%;">[]</td><td style="width: 80%; text-align: right;">□ 가족도 주민등록번호 [] []</td></tr> <tr> <td>명</td><td>[]</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r> <td>주</td><td>[]</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r> <td>식</td><td>[]</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r> <td colspan="2">증진번호</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r> <td colspan="2">증명자</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r> <td colspan="2">사고차량</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r> <td colspan="2">사고현장</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r> <td colspan="2">발생일자</td><td style="text-align: right;">2019.03.12 15:10</td></tr> <tr> <td colspan="2">발생장소</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r> <td colspan="2">사고유형</td><td style="text-align: right;">■ 충돌사고 □ 차량단속 □ 차대사망 □ 기타</td></tr> <tr> <td colspan="2">사고종류</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r> <td colspan="2">피해내용</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r> <td colspan="2">사고개요</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body> </table>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경수번호 제30	성	[]	□ 가족도 주민등록번호 [] []	명	[]	[]	주	[]	[]	식	[]	[]	증진번호		[]	증명자		[]	사고차량		[]	사고현장		[]	발생일자		2019.03.12 15:10	발생장소		[]	사고유형		■ 충돌사고 □ 차량단속 □ 차대사망 □ 기타	사고종류		[]	피해내용		[]	사고개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경수번호 제30																																													
성	[]	□ 가족도 주민등록번호 [] []																																													
명	[]	[]																																													
주	[]	[]																																													
식	[]	[]																																													
증진번호		[]																																													
증명자		[]																																													
사고차량		[]																																													
사고현장		[]																																													
발생일자		2019.03.12 15:10																																													
발생장소		[]																																													
사고유형		■ 충돌사고 □ 차량단속 □ 차대사망 □ 기타																																													
사고종류		[]																																													
피해내용		[]																																													
사고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방향의 도로, 소로)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진행한 방향의 도로, 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피해차량으로 판단됨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앞부분, 피청구차량의 왼쪽 측면이 손상됨)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와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대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을,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대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및 충격부위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8의 (가)는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동시 진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는 이륜차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고,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대로에서 진입하는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이었던 상황이므로, 도표 308의 (가)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다)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사고(B선진입) (기본과실)					참고기준 308 (다)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876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선진입하여 진행 중 대로에서 후진입하여 교차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8(다)	<p>(다) 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는 A이륜차에게 우선권이 있고,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시진입의 경우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p> <p>대로를 진행하는 A이륜차가 선진입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소로에서 후진입한 B차량의 과실을 높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하였다. 다만, 소로를 진행하는 B차량이라도 명확하게 선진입한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으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였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소로의 이면도로를 통과하여 맞은편 주택가로 진입하였는데,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과실비율은 동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을,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서행하였고, 청구차량의 선진입은 인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소로)
- 동영상(양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대로)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와 소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대로에서 후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소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대로에서 직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동영상을 보면 청구차량이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의 충격부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8의 (다)는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진행한 차량이 선진입한 경우 소로에서 진행한 차량이라도 명확하게 선진입한 경우에는 통행우선권이 있는 점과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로에서 선진입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 대로에서 후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선진입을 하였고,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진입한 상황이므로, 도표 308의 (다)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가) 소로 직진 대 대로 직진 사고(동시진입) (기본과실)					참고기준 309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5494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9(가)		<p>(가) B차량이 대로를 진행한 경우에도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 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시 진입시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고, 선진입 여부에 따라 기본과실을 50:50과 75:25로 각각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소로에서 진입하여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서행으로 진행하던 청구차량으로서는 갑자기 소로에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을 예상하고,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p>피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이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청구차량이 대로 직진 중 소로에서 직진하는 피청 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2)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앞부분 손상, 피 청구차량의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대소로 차이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을 하던 차량과 소로에서 직진을 하던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상호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진행 한 도로가 오른쪽이지만,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인 점, 제출된 동영상만으로는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감속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9의 (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이 대로에서, 이륜차가 소로에서 교차로를 동시에 진 입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도표인데,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는 점과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 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동시 진입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하였고, 이를 차인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진행하였던 상황이므로, 도표 309의 (가)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나) 소로 직진 대 대로 직진 사고(A선진입) (기본과실 준용)				참고기준 309 (나)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1462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소로 구분이 있는 황색점멸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왼쪽 소로에서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9(나)		<p>(나) B차량이 대로를 진행한 경우에도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시 진입시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고, 선진입 여부에 따라 기본과실을 50:50과 75:25로 각각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정상 직진 중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p> <p>•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309의 (가) 동시진입 사고에 해당하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1)
- 동영상(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진입 중 소로에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2)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앞부분 손상, 피청구차량의 오른쪽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대소로 차이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을 하던 차량과 소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한 이륜차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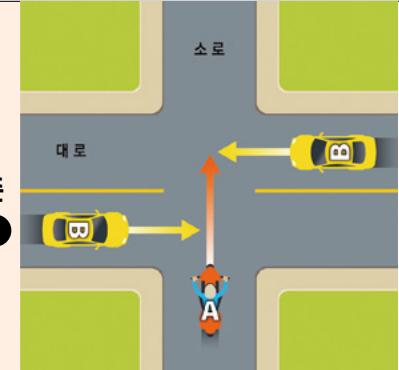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소로에서 선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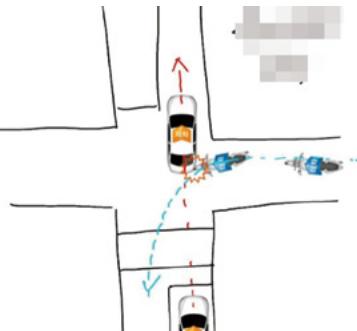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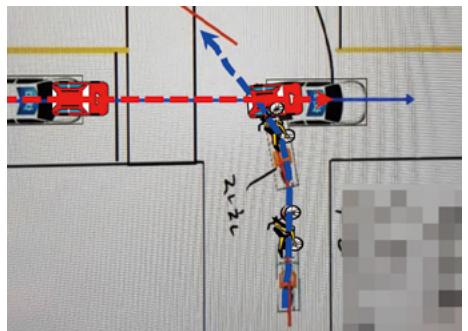
결정 이유

-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오른쪽 대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왼쪽 소로에서 진입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9의 (나)는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진행한 이륜차가 선진입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차량이 대로에서 진입한 점, 소로에서 진행하는 이륜차가 교차로에 선진입한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지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로에서 후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 소로에서 선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소로에서 선진입한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09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다) 소로 직진 대 대로 직진 사고(B선진입) (기본과실 준용)			신호등 없음	사거리		소로 직진		대로 직진	참고기준 309 (다)
--	---	---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876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5 : 25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9(다)		<p>(다) B차량이 대로를 진행한 경우에도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시 진입시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고, 선진입 여부에 따라 기본과실을 50:50과 75:25로 각각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5 : 25</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상태에서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p>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피 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 손상)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이고, 피 청구차량(이륜차)이 진행한 도로가 소로임)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오른쪽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선진입한 차량과 소로에서 후진입한 이륜차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를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오른쪽 소로에서 후진입한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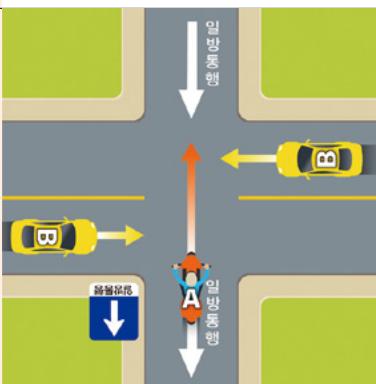
결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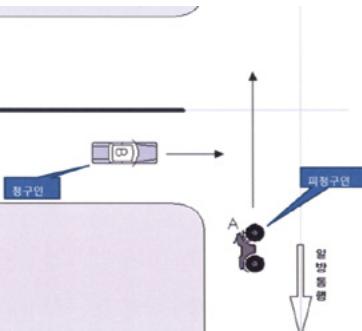
- 황색점멸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를 진행 중 오른쪽 소로에서 진행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대로에서 진행한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감속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에 기여한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9의 (다)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선진입을 하였던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5%, 소로에서 후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5%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황색점멸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선진입하여 진행 중 소로에서 후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09의 (다)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5% ● 피청구차량 75%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음)

이륜차 일방통행 위반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신호등 없음	사거리	직진(일방통행 위반)	직진

313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264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80 : 2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선진입하여 직진 중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13	 <p>A이륜차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하였으므로 도표 208을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 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p>피청구인</p> 

• 청구차량이 정상 주행 중 역주행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는 시점에 피청구차량이 역주행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이면도로의 골목길 사거리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 중 정상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전형적인 도표 313의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오른쪽 도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의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오른쪽 앞부분 측면 손상)

- 사고현장 사진(노면에 일방통행 표시가 있음)
-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한쪽 도로에 일방통행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교차로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직진하였던 점, 사고 장소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인 점, 청구차량이 교차로를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의 손상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13은 이륜차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하였으므로, 도표 208을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직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13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한쪽 차량 신호위반)

신호위반 사고 (이륜차 적색신호 직진) (기본과실)				참고기준
	신호등 있음	사거리	적색 직진	녹색화살표 좌회전 314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885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 			
참고 인정기준 314	<p>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처럼 신호위반을 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좌회전 신호 받아 선행차량을 따라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거의 벗어나던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신호위반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p>피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은 신호위반하여 직진, 청구차량은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이륜차임을 감안하여 청구차량 과실 80%, 피청구차량 과실 20% 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피청구차량 진행 도로) • 동영상(신호위반 직진 중 전도된 피청구차량(이륜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뒤쪽 측면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 있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인 차량과, 신호위반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양 차량이 모두 신호위반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상 피청구차량(이륜차)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음(화면의 녹색신호는 이륜차 직진신호가 아님)
- 청구차량은 정상신호 좌회전 또는 좌회전 완료 무렵 신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막은편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위반 직진하다가 제동하면서 넘어져 청구차량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신호위반 사실 인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차량 넘어지는 시점 교차로 신호등 녹색으로 바뀐 점은 확인되나 그것만으로 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을 단정할 수 없고, 청구차량 파손부위로 보아 좌회전신호에 교차로 진입후 교차로 빠져나가는 시점에 사고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314는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신호위반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좌회전신호에 좌회전차량 0%, 신호위반 직진 이륜차량 100%로 기본 과실비율을 정하였음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비보호 좌회전)

자동차 비보호 좌회전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318
신호등 있음	사거리	녹색 직진	비보호좌회전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098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18	<p>기본비율 A : B = 10 : 90</p>	<p>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2010. 8. 24. 개정되어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B차량으로서는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으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련번호 329, 542 참조), A 이륜차가 녹색신호에 직진하였고,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p>		<p>청구인차량은 자세등 없이 비보호좌회전하다 접촉한 사고</p> <p>피청구인차량은 1차로 녹색 신호 직진 중</p>

입증 자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노면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음)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측면 손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던 도로의 모습)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
|---|---|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인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청구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청구차량의 과속을 인정하기 어렵고,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18은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비보호 좌회전차량은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 점과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비보호 좌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90%, 직진차량인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18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비보호 좌회전)

이륜차 비보호 좌회전 사고 (기본과실 준용)					참고기준 319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2228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 	
참고 인정기준 319		<p>A이륜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A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갑자기 급진입하여 청구차량으로서는 피양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약도 미제출</p> <p>• 교차로 내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이륜차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교통사고사실확인원</th><th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교통사고 접수번호 : 제 [REDACTED]</th></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성명 주소</td><td colspan="2" style="padding: 5px;"> <input type="checkbox"/> 가해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인동의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피해자 </td></tr> <tr> <td style="padding: 5px;">운전면허 증명 : 제1종 보통</td><td colspan="2" style="padding: 5px;">번호 : 13-02-</td></tr> <tr> <td style="padding: 5px;">사고처방 차종 : 승용차</td><td colspan="2" style="padding: 5px;">번호 : [REDACTED] (소유자 : [REDACTED])</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5px;"> 발생일시 : 2017.01.06 18:25 발생장소 : [REDACTED] 사고유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 안전운전의무위반 피해내용 : 인화 : 사망 0, 부상 1 명, 물耗 : [REDACTED] #1차량 [REDACTED] 방향에서 [REDACTED] 방향으로 바보호 회피전진, #2차량 방향에서 [REDACTED] 방향으로 직진 중인 #2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5px;">사고개요</td></tr> </tbody> </table>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 제 [REDACTED]	성명 주소	<input type="checkbox"/> 가해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인동의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피해자		운전면허 증명 : 제1종 보통	번호 : 13-02-		사고처방 차종 : 승용차	번호 : [REDACTED] (소유자 : [REDACTED])		발생일시 : 2017.01.06 18:25 발생장소 : [REDACTED] 사고유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 안전운전의무위반 피해내용 : 인화 : 사망 0, 부상 1 명, 물耗 : [REDACTED] #1차량 [REDACTED] 방향에서 [REDACTED] 방향으로 바보호 회피전진, #2차량 방향에서 [REDACTED] 방향으로 직진 중인 #2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사고개요			 01.06.2017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 제 [REDACTED]																	
성명 주소	<input type="checkbox"/> 가해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인동의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피해자																		
운전면허 증명 : 제1종 보통	번호 : 13-02-																		
사고처방 차종 : 승용차	번호 : [REDACTED] (소유자 : [REDACTED])																		
발생일시 : 2017.01.06 18:25 발생장소 : [REDACTED] 사고유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 안전운전의무위반 피해내용 : 인화 : 사망 0, 부상 1 명, 물耗 : [REDACTED] #1차량 [REDACTED] 방향에서 [REDACTED] 방향으로 바보호 회피전진, #2차량 방향에서 [REDACTED] 방향으로 직진 중인 #2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사고개요																			
<p>•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의 비보호 좌회전이 확인됨</p>	<p>•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p>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인 이륜차와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양 차량의 충격부위 등에 비추어 청구차량의 무과실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제출된 사고현장 사진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양 차량의 충격부위 등에 비추어 청구차량의 무과실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제출된 사고현장 사진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19는 이륜차가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으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던 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녹색 신호에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비보호 좌회전차량인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삼거리 교차로인 사고 장소만 상이할 뿐 나머지 사실관계는 도표 319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내용과 동일하여 도표 319를 준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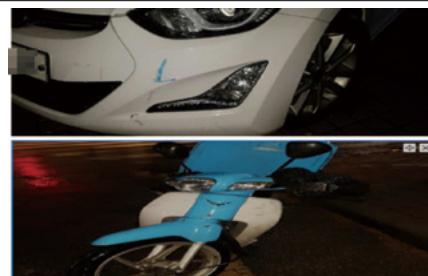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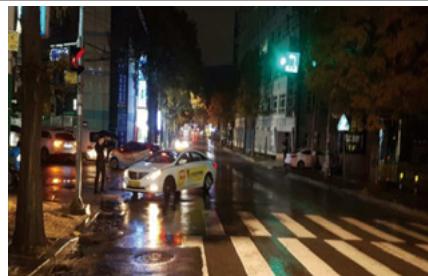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비보호 좌회전)

이륜차 비보호 좌회전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신호등 있음	삼거리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녹색작전	319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6-05181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80 : 2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정체 차량들 사이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19	<p>A이륜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A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정체 차량들 사이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정체 차량들 사이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을 피양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정체구간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진로변경하여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진로변경, 피청구차량의 기좌회전 등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 중 정체 차량들 사이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의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도로의 모습)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앞부분, 피청구 차량의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인 이륜차와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이 정체 차량들 사이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청구차량의 시야가 제한되었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청 구차량(이륜차)이 정체 차량들 사이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정체 차량들 사이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청구차량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음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청구차량이 직진 중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다 차량이 정체되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직진 중이 었고, 정체차로의 차량으로 인하여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의 발견이 늦어진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19는 이륜차가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으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던 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녹색신 호에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비보호 좌회전차량인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 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고, 삼거리 교차로인 사실을 제외하면 도표 319과 동일한 사고 내용이므로, 도 표 319를 준용하여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정체 차량들 사이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피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양 차량 신호위반)

신호위반 사고(자동차 녹색진입,황(적)색 좌회전) (수정과실)	 신호등 있음	 교차로	 황(적)색 직진	 녹색진입,황(적)색 좌회전	320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685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후 황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0		<p>양측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나, A이륜차가 비록 황(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더라도 직진 중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좌회전 중인 B차량에 비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유사도표 211을 기초로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입증 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교통사고사실확인원</th><th style="text-align: center;">교통사고 접수번호</th><th style="text-align: center;">경찰서</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별명</td><td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d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d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소</td><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 (경찰서)</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운전면적</td><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종류</td><td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d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d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고처</td><td style="text-align: center;">승용차</td><td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d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고일자</td><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발생일자</td><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발생장소</td><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고위치</td><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checked="" type="checkbox"/></td><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고원인</td><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피해내용</td><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고개요</td><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고내용</td><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body> </table>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경찰서	별명	[Redacted]	[Redacted]	[Redacted]	주소	[Redacted] (경찰서)			운전면적	[Redacted]			종류	[Redacted]	[Redacted]	[Redacted]	사고처	승용차	[Redacted]	[Redacted]	사고일자	[Redacted]			발생일자	[Redacted]			발생장소	[Redacted]			사고위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고원인	[Redacted]			피해내용	[Redacted]			사고개요	[Redacted]			사고내용	[Redacted]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경찰서																																																						
별명	[Redacted]	[Redacted]	[Redacted]																																																						
주소	[Redacted] (경찰서)																																																								
운전면적	[Redacted]																																																								
종류	[Redacted]	[Redacted]	[Redacted]																																																						
사고처	승용차	[Redacted]	[Redacted]																																																						
사고일자	[Redacted]																																																								
발생일자	[Redacted]																																																								
발생장소	[Redacted]																																																								
사고위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고원인	[Redacted]																																																								
피해내용	[Redacted]																																																								
사고개요	[Redacted]																																																								
사고내용	[Redac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피청구 차량(이륜차)이 직진을 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기재됨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조수석 앞측면, 피청구 차량(이륜차)의 앞부분이 손상됨)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진입 후 황(적)색신호에 좌회전 중인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황(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비보호 좌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황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과속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점,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후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던 점, 청구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피청구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감속 또는 제동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0는 황(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황(적)색신호에 직진 중인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나 이륜차가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좌회전차량에 비해 과실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으며,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후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20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양 차량 신호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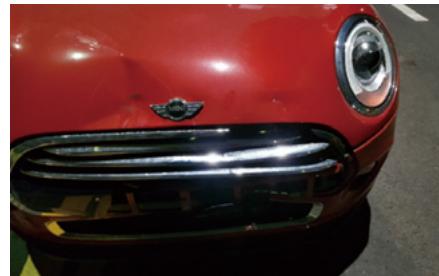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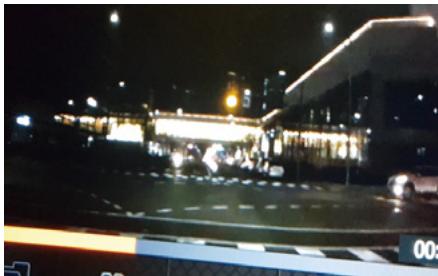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 (직진 대 좌회전) (수정과실)				참고기준
	신호등 있음	사거리	황(적)색 직진	황(적)색 좌회전

322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681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 진입 중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 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2	<p>양측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나, A이륜차가 비록 황(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더라도 직진 중인 점에 비추어 좌회전 중인 B차량에 비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p>약도 미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직진신호에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좌회전,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10%,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황색신호에 서행으로 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황색신호에 양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인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대기 후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 모두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고, 청구차량이 좌회전, 피청구차량이 직진한 점,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점, 피청구차량은 이륜차인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2는 황(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나, 이륜차가 비록 황(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더라도 직진 중이었으므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인 차량에 비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신호위반 하여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황색신호에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22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 선진입한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양 차량 신호위반)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 (좌회전 대 직진) (기본과실)				참고기준		
		신호등 있음	사거리	황(적)색 좌회전	황(적)색 직진	323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641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 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3	<p>A이륜차가 좌회전차량이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p>적색신호에 좌회전중인 피청구차량</p> <p>녹색→황색신호로 변경 중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청구차량</p>	<p>피청구인</p> <p>후행에서 주행하고면서 황색신호를 보고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p> <p>황색상태</p> <p>신호다기후 황색으로 바뀌자 선출발하는 피청구인 차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던 상황에서 직진하였고, 피청구차량(이륜차)은 맞은편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 피청구차량의 후진입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은 신호대기 후 황색신호로 변경되어 좌회전을 하였고,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 진입하다가 피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은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양 차량의 모습) 동영상(양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인 이륜차와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충돌한 사고로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좌회전차량인 점, 제출된 자료 및 동영상에 나타난 사고 경위, 양 차량 주행속도 및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3는 황(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이륜차와 직진 중인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륜차가 좌회전차량이므로 직진차량에 비하여 높은 주의의무 요구되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청구차량이 직진 중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각한 사고이므로, 도표 323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양 차량 신호위반)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 (좌회전 대 직진) (수정과실)				참고기준
	신호등 있음	사거리	황(적)색 좌회전	황(적)색 직진

323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3480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55 : 45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3	<p>A이륜차가 좌회전차량이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p>•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맞은편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였음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p>		<p>피청구인</p> <p>약도 미제출</p>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 2019-00000000호
성 명	김기자 여성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45678
주 소	경기도	(전화번호 : 010-1234-5678)	
운전면허	종별 : 제1종 보통	변호 :	
사고차량	차종 : 승용차	번호 :	(소유자 :)
발생날짜	2019. 05. 15 22:00		
발생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로인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피해내용	피해자 : 사망 0, 부상 1명		물품 : 원 상당금
사고개요	#1차량이 신호위반하고 회전하면서 #2차량(전동킥보드)과 충돌하면서 신호위반하고 속도감소한 #2차량은 운전석 쪽 전기부가 충돌로 시경고장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방향의 도로)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진행한 방향의 도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 피청구차량의 앞부분이 손상됨)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인 이륜차와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신호대기 위치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였고,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시작하여 좌회전 신호에 충격, 청구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충격),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인 점,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좌회전차량인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자로 기재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3는 황(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이륜차와 직진 중인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륜차가 좌회전차량이므로 직진차량에 비하여 높은 주의의무 요구되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청구차량이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23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였고,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된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5% ● 피청구차량 55%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신호등 없음)

직진 대 좌회전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신호등 없음	사거리	직진	좌회전	324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2071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4		<p>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도표 214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률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사고 현장 도 [사고건수 : 1,240회]</p> <p>1차로에서 왼쪽 차로를 향해 직진하는 차량이 차선을 침범해 차로를 벗어나거나 차로를 침범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차로를 벗어나거나 차로를 침범하는 차량은 차선을 침범하거나 차로를 벗어나거나 차로를 침범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차량입니다.</p>	 <p>피청구인</p> <p>1차로에서 왼쪽 차로를 향해 직진하는 차량이 차선을 침범해 차로를 벗어나거나 차로를 침범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차로를 벗어나거나 차로를 침범하는 차량은 차선을 침범하거나 차로를 벗어나거나 차로를 침범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차량입니다.</p>

입증 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교통사고사실확인원</th><th style="text-align: right;">교통사고 신고수정일 제2017-00020</th></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5%;">경기명</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r> <td>주소</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r> <td>운전여부</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승용·제1종 무면허</td></tr> <tr> <td>차종</td><td>이륜차</td><td>번호</td><td>[Redacted]</td></tr> <tr> <td>사고처량</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r> <td>발생일시</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2017.05.31 09:30</td></tr> <tr> <td>발생장소</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r> <td>사고유형</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ชน <input type="checkbox"/> 기타</td></tr> <tr> <td>사고원인</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r> <td>피해내용</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r> <td>사고내용</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td></tr> </tbody> </table>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신고수정일 제2017-00020	경기명	[Redacted]		주소	[Redacted]		운전여부	승용·제1종 무면허		차종	이륜차	번호	[Redacted]	사고처량	[Redacted]		발생일시	2017.05.31 09:30		발생장소	[Redacted]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ชน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Redacted]		피해내용	[Redacted]		사고내용	[Redacted]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신고수정일 제2017-00020																																				
경기명	[Redacted]																																					
주소	[Redacted]																																					
운전여부	승용·제1종 무면허																																					
차종	이륜차	번호	[Redacted]																																			
사고처량	[Redacted]																																					
발생일시	2017.05.31 09:30																																					
발생장소	[Redacted]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ชน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Redacted]																																					
피해내용	[Redacted]																																					
사고내용	[Redac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인 모습) • 동영상(맞은편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조수석 앞부분, 피청구차량의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전면부를 충돌한 사고로, 신호기 없는 교차로이고,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4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도표 214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24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신호등 없음)

직진 대 좌회전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324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242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급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4	<p>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도표 214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 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일시정지 상태에서 교차로의 상황을 확인 후 좌회전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 서행 불이행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의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사진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급좌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소로로 급좌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제출된 동영상을 볼 때, 청구차량은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근접거리에서 급좌회전을 하였던 점,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4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도표 214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24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급좌회전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